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2021. 6. 15.(화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
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 현황

가. 지출내역

(단위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 계 목				
합	계			290,000,000	280,276,260	9,723,740	
지 역 경 제 과	지역경제 인프라 구축	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	사 무 관리비	250,000,000	249,223,500	776,500	금천G밸리 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발행
		골목경제 지원센터 운영	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	25,000,000	16,326,660	8,673,340	코로나-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골목경제 지원센터(전담추진단)를 구성·운영
			사 무 관리비	15,000,000	14,726,100	273,900	

나. 검토의견

○ 2020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금천G밸리 상품권 발행 등
3건 2억 8,027만 6천원을 지출하였음.

지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
사용하였으며,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20. 4. 30.] [법률 제16889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